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에서 분리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6. 1. 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조문을 새롭게 정리하고 일부 조항을 조정 삭제하고자 함이었습니다.
- 주요 내용은 물품의 용도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을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하고 관리 책임과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기증품의 취득시 기부금품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업무범위와 물품의 보관관리 책임, 망실, 훼손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중복된 규정과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 또는 정리하여 2007년부터 도입되는 복식부기제도 시행에 대비한 행정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 고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표준조례 안에 따라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없었으며, 개정된 주요사항은 제출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 질의 및 답변 :

- 문 : 기증품의 취득시 도의 기부금품모집심의위원회의에 심의를 요청해서 심의를 거쳐야하는 사항은 법령사항입니까 ?
- 답 : 법령사항입니다.
- 문 : 기증품의 취득시 심의대상 물품은 어떤것인지요 ?
- 답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심의대상 제외품목 외의 물품은 전부 심의대상입니다.

○ 문 : 그러니까 대상물건에 따라 심의대상이 정해져 있느냐, 기부주체에 따른 것이냐 ? 지금까지의 기부금품 취득과는 어떻게 다른 내용인지(기초지자체의 권한을 도가 가져가는 것인지)심의대상의 기준물품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 답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기부금품을 제외한 기부금품은 심의대상입니다. 정치자금법, 결핵예방 등 타법률에 명시된 항목외는 심사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문 : 결국 기부금품의 취득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

● 답 : 예

7. 토 론 : 없음

8. 심사결과

○ 2006. 6. 7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